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84호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사업단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가 무역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산업특화 무역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는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

-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주력산업 전문가의 양성 및 공급이 시급

○ 특히 지방 내수기업·수출 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견·강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역산업 전문가 양성·공급에 중점

-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 무역전문가 수급 애로 단기 해소방안으로 “지역특화 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제공

- (중견·강소기업) 전문인력 자체확보를 위한 지역청년인재 양성방안으로 지역산업별 특화과정 재편 및 취업연계과정 마련

□ ‘27년 사업 규모 : 18.3억원 (정부 예산안 편성 기준이며 추후 변경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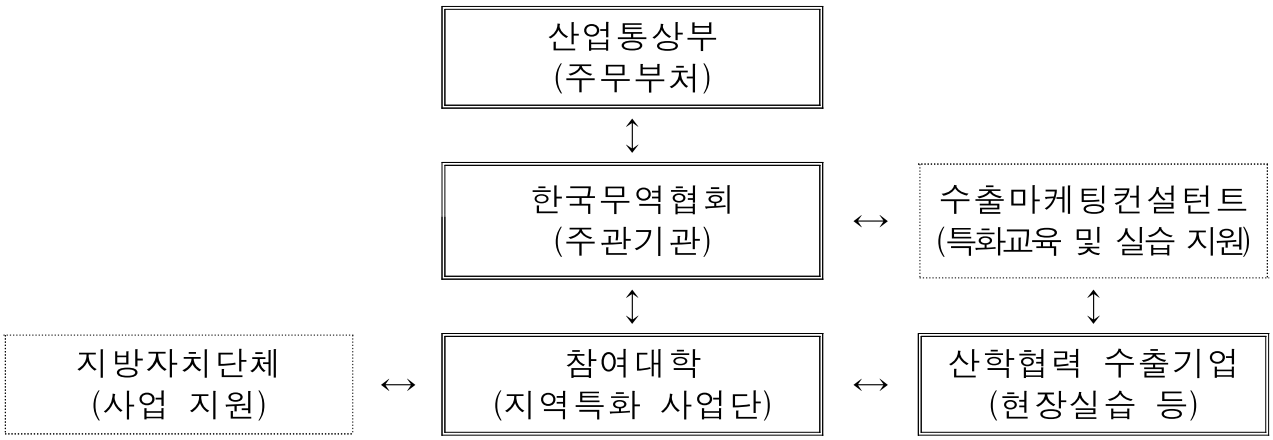
□ 선발 예정대학 수 : 20개 내외 (최종 국고 예산 변동 시 변경 가능)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주관기관 : (사)한국무역협회

□ 사업내용

○ 전국 4년제 대학을 선정,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사업단”을 설치하여 산·관·학 융합형 무역실무 및 현장실습 교육 실시



○ 참여대학 : 국내지역별, 산업별 안배 예정

- 특화산업 : 식품·농식품, 화장품·뷰티, 패션·섬유, 생활용품, 가전·전자, 바이오헬스, ICT·디지털, 조선·해양

○ 참여인원 : 사업단별 25명 이상 학생 선발

○ 교육시간 및 내용 : 기본・심화교육, 현장실습 등 총 15학점 480시간 이상

구 분	교 육 명	시간(h)	학점	교육기관	내 용
기본교육 (1월~2월)	기초교육	30	-	무역협회, 대학	무역실무 기초 특강(협회) 맞춤형 기본교육(대학)
	소 계	**30**	-		
심화교육 (1월~ 차년도 2월)	정규과정	90	6	대학	무역 전공과목
	산업특화과정	45	3		특화산업 이해 및 통상환경, 수출마케팅 교육
	특별과정	45	-		AI,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무역
	소 계	**180**	9		
특화지역 컨설팅	멘토링	무역현장 마케팅 실습과 연계	-	외부 전문가	산학협력 무역현장실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무역현장 마케팅 실습 (기본교육 수료 이후)	산학협력 중소기업 현장지원	270 이상	6	대학	수출단계별 종합 지원 (전자상거래 실습 포함)
합 계		**480 이상**	**15**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4년제 대학으로

- 2027년 1월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한 대학
- 4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해 15학점 이상 학점 부여가 가능한 대학
- 지역특화산업을 선정, 지역전문가 양성 및 산학협력사업이 가능한 대학
- 연간 5,000만원 이상 현금 매칭(지자체, 기업 등 외부 자금 포함) 가능한 대학
- 대학 내에 산학협력단(처)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 2027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신청 제외 가능 대상

○ 최근 3년 이내 GTEP사업단 활동 도중 선정취소 대학
○ 최근 3년 이내 교육부 감사 등 관계기관 및 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대학
○ 최근 3년 이내 부정사항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 GTEP사업 참여 기간 중 3년 연속 최하위 평가그룹에 속한 대학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

○ 우대요건

- 특화산업 이공계학과 등 타 학과와 공동사업 추진 대학
- 기존 참여대학 중 연차평가결과 추진성과가 우수한 대학
- 서비스 산업 수출 특화 교육이 가능한 대학
 * 특히 ICT, 의료, 헬스케어, 콘텐츠 등
- 사업 참가 학생에 대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대학
 * 정기 채용박람회, 외부기관 인턴십 MOU 체결, 취·창업 전문 교육 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대학 (8개 특화산업)

○ 지원기간 : 2027. 1 ~ 2030. 3 (기수별 15개월, 총 3기 39개월)

- (21기) '27. 1. 1 ~ '28. 3. 31
- (22기) '28. 1. 1 ~ '29. 3. 31
- (23기) '29. 1. 1 ~ '30. 3. 31

* 연차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도 선정취소 가능

○ 지원내용 : 기수별 평균 92백만원 내외

* 2027년 정부안 기준
* 매년도 연차평가에 따라 사업단의 차년도 예산 일부 차등 지원

- 기본교육, 심화교육(산업특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육비
- 무역현장 마케팅실습 및 전자상거래 실습비
- 사업단 운영 인건비 및 산학협력단(처) 간접비

3. 신청요령

○ 신청서 및 관계서류 교부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www.newtradecampus.kita.net)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공고 및 별첨 서류,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 등)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11. 27(금),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증빙서류 등 총 10부(원본 1부 포함)

- 신청서 파일이 포함된 USB 추가제출

○ 접수방법 : 우편접수(접수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오피스 4F.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글로벌연수실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사업단 선정위원회 평가 →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특화산업에 대한 교육 계획, 추진능력 및 의지,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대응자금 조성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 지역과 특화산업을 안배하여 선정

<대응자금 확보별 배점>

대응자금 규모	배 점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1점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2점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3점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4점
9천만원 이상	5점

※ 평가 총점은 100점으로, 대학 자체 대응자금 및 외부기관 대응자금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평가

○ 결과발표 : 2026. 12. 16(수), 산업통상부(www.motir.go.kr)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유의사항

ㅇ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며, 세부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각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2026. 11. 10(화)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오피스 4층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1강의실

□ 문의처

ㅇ 문의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044-203-4019)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글로벌연수실(02-6000-5167/5366)

별첨 1. 제21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운영계획 1부.
2.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참가신청(계획서) 양식 1부.
3.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운영규정 1부. 끝.

〈별첨1〉

2027년 제21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운영계획

*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2026. 11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1 사업 개요

□ 목 적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무역실무 역량을 갖춘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지역별 주력산업 및 제품에 대한 이해, 해외시장·인증·규제 등 산업 전문지식과 무역실무·전자상거래·AI 활용·해외마케팅 등 무역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기업의 수출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특히 지방 내수기업·수출 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견·강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역산업 전문가 양성·공급에 중점

-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 무역전문가 수급 애로 단기 해소방안으로 '지역특화산업별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제공
- (중견·강소기업) 전문인력 자체확보를 위한 지역 청년인재 양성방안으로 지역산업별 특화과정 교육 및 취업연계과정 마련

□ 연 혁

○ Trade Incubator 사업 착수·운영('02. 2월~'07. 2월)

○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사업으로 통합·개편('07. 7월)

- 1기('07) ~ 2기('08) 사업단 출범('07. 7월) : 19개 대학
- 3기('09) ~ 5기('11) 사업단 출범('09. 7월) : 25개 대학
- 6기('12) ~ 8기('14) 사업단 출범('12. 7월) : 24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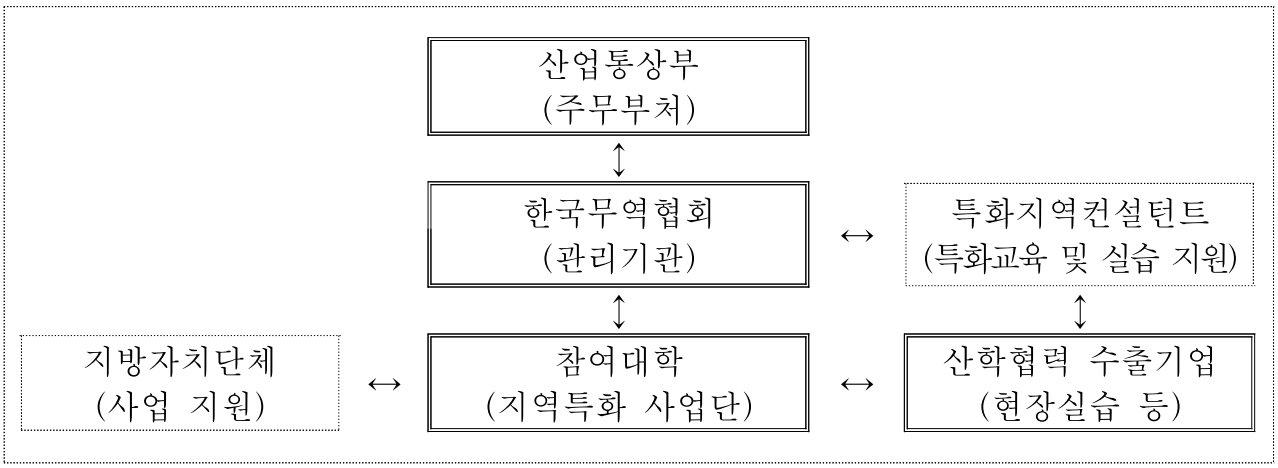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사업으로 확대·개편('13. 7월)

- 9기('15) ~ 11기('17) 사업단 출범('15. 1월) : 24개 대학
- 12기('18) ~ 14기('20) 사업단 출범('18. 1월) : 20개 대학
- 15기('21) ~ 17기('23) 사업단 출범('21. 1월) : 20개 대학
- 18기('24) ~ 20기('26) 사업단 출범('24. 1월) : 20개 대학
- 21기('27) ~ 23기('29) 사업단 출범('27. 1월)

□ 추진체계

○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을 설치, 산·학·관 연계형 지역특화 교육,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 실시

- 산업통상부(주무부처) : 사업총괄, 국비 지원
- 한국무역협회(주관기관) : 기본교육, 특화지역컨설팅, 국고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
- 대학(사업단) : 참여 학생 모집, 기본·심화교육, 무역현장마케팅실습 및 사업단 운영
- 지자체 : 대학 사업비 지원 및 연계 지원사업 운영
 * 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 제외
- 산학협력 수출기업 : 현장실습 교육기회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27년 1월 ~ 2028년 3월 (15개월)

○ 사업단 : 전국 20개 대학교

< '26년도 GTEP 참여 사업단 현황(참고)>

권 역	참여 대학명
서 울 (3)	경희대(동남아), 건국대(동남아), 숭실대(유럽)
중부권 (6)	강원대(동남아), 한국외대(동남아), 단국대(동남아), 인하대(중앙아), 한국공대(중남미), 인천대(중동)
서남권 (7)	순천향대(동남아), 제주대(동남아), 전북대(동남아), 목포대(동남아), 순천대(중앙아), 충북대(인도), 청주대(중남미)
동남권 (4)	부경대(동남아), 동국대(중앙아), 인제대(중앙아), 영남대(중동)

* 4개 대학(경희, 순천향, 한국외, 인천)은 서비스 산업 수출 선도 대학 지정

○ 교육인원 : 약 500명 (사업단별 25명 이상, 기본교육 수료자 기준)

○ 교육시간 : 기본・심화교육, 현장실습 등 총 15학점 480시간 이상

<GTEP 교육 프로그램>

구 분	교 육 명	시간(h)	학점	교육기관	내 용
기본교육	기본교육	30	-	무역협회 대학	무역실무 기초 특강(협회) 맞춤형 기본교육(대학)
	소 계	30	-		
심화교육	정규과정	90	6	대학	무역 전공과목
	산업특화과정	45	3	대학	특화산업 이해 및 통상환경 교육 등
	특별과정	45	-	무역협회 대학	AI·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무역교육 프로그램, 취업·창업 컨설팅 포함
	소 계	180	9		
특화지역 컨 설 팅	멘토링	무역현장 마케팅 실습과 연계	-	외부 전문가	산학협력 무역현장실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무역현장 마 케 팅 실 습	산학협력 중소기업 현장지원	270 이상	6	대학	수출단계별 종합 지원 (전자상거래 실습 포함)
합 계		480 이상	15		

□ 연차별 교육추진 계획(안)

구 분	교육 시간	1차년도												2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기본교육(무역협회/대학) - 무역실무 기초 특강(18시간) - 대학별 맞춤형 교육(12시간)	30h	■	■													
▪ 심화교육(사업단, 9학점) - 정규무역과정(90시간, 6학점) - 산업특화과정(45시간, 3학점) - 특별과정(45시간)	180h	▒	▒	■	■	■	■	■	■	■	■	■	■	■	■	
▪ 무역현장 마케팅실습(사업단, 6학점) - 산학협력중소기업 현장지원	270h	▒	▒	■	■	■	■	■	■	■	■	■	■	■	■	
▪ 특화지역컨설팅(외부전문가) - 무역현장마케팅실습 지원 ▪ 취·창업 연계사업 시행(사업단)		▒	▒	■	■	■	■	■	■	■	■	■	■	■	■	

* 무역현장 마케팅실습은 기본교육 수료 이후 가능

2 세부 추진 계획

■ 해외지역 특화교육 및 산학협력에서 국내 지역 주력·특화산업 특화교육 및 산학협력으로 전환
■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역실무 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실습 적용 확대
■ 지역 수출기업과 GTEP 수료생 간 취업연계 및 채용매칭 강화

1 교육 프로그램

■ 기 간 : 15개월간 총 480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
■ 구 성
(1) 기본교육 : 30시간 (학점 자율)
(2) 심화교육 : 180시간 이상 (9학점 이상)
○ 정 규 과 정 : 90시간 이상 (6학점 이상)
○ 산업특화과정 : 45시간 이상 (3학점 이상)
○ 특 별 과 정 : 45시간 이상 (학점 자율)
(3) 무역현장 마케팅실습 : 270시간 이상 (6학점 이상)
○ 특화지역컨설팅 : 산학협력 무역현장실습을 위한 멘토링
(4) 취·창업 연계사업
■ 학 점 : 총 15학점 이상 인정

(1) 기본교육 : 30시간 (학점 자율)

○ **교육방식 및 내용**

1) 무역실무 필수교육 : 과정 전반의 이해 및 실습을 위한 기초특강 (18시간)

– 무역이론, 수출입시뮬레이션 교육 등 무역실무와 산업 및 지역 정보를 겸비한 예비무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필수 교육 시행 (16시간)
– 생성형 AI 활용 무역 기초 필수 E러닝 수강(2시간)

2) 기본 교육 : 대학별 특성에 맞춘 기본교육 과정 신설 (12시간, 사업단)

– 무역실무, e러닝 무역실무,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코딩 데이터 분석, 자격증, 어학 등 자율 구성 및 교육 (* **단, 참여자 과반수가 무역학 비전공자일 경우 30시간 모두 무역실무 교육 시행 필수**)

⇒ 교육 전반에 걸쳐 '이론평가', '조별발표' 실시 등 교육성과 측정
* 평가결과 기본교육 미수료 학생은 GTEP사업 참여 불가 (수료기준 : 사무국 협의)

(2) 심화교육 : 총 180시간 이상 (학점 9학점 이상)

○ 교육방식 및 내용

1) 정규과정 (90시간 이상, 6학점 이상)

– 무역학 또는 통상학 부전공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업단 참여 학생은 사업단내 개설된 전공과목을 필수 수강

· 무역학 또는 통상학 전공자는 기 수강 과목일 경우 수강을 인정하여 참여 학생들의 부담 경감

· 비전공자는 무역학 또는 통상학 부전공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수 수강

2) 산업특화과정 (45시간 이상, 3학점 이상)

– 국내지역 특화산업 관련 교육커리큘럼 수립, 각 사업단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 산업 및 제품 이해, 산업구조 및 밸류체인, 글로벌 시장동향, 글로벌 공급망 및 통상환경, 해외 인증·규제, 해외마케팅 전략, 성공사례 등 산업특화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 교육 (**반드시 무역과 연계하여 교육할 것**)

3) 특별과정 (45시간 이상)

– 특화산업별 진출 유망시장에 맞는 e-마켓플레이스 및 SNS 등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무역교육 프로그램을 각 사업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20시간 이상)

· 해외 온라인몰 전문판매기업 등 외부전문가를 통해 지역별 유망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제품 등록, 주문 처리절차, 배송, 제품소싱 기법 등 교육

* 쇼피/라자다(동남아), 플립카트(인도), 아마존(글로벌) 등

· SNS 채널*별 특징, 콘텐츠 제작・활용, 소비자 행태분석 등 마케팅 활용 실무기법 교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AI 활용 무역실무 프로그램을 사업단 자율로 실시 (사업단 : 15시간 이상)**

· 생성형 AI 활용 무역업무 실무, AI 활용 해외시장 조사, 무역데이터 AI 활용 해외바이어 발굴, 생성형 AI 활용 해외마케팅 콘텐츠 제작, AI 활용 B2C 이커머스 마케팅 등

- GTEP 참여학생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역업계 취업 및 무역·전자상거래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 및 특강을 사업단별로 자율 실시(10시간 이상)
- 상기外 취업・창업, 국제무역환경, 비즈니스협상, 테이블 매너, 자격증 취득 등 상기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과정 이외의 과정 개설시 추가 과정으로 대학 대응자금을 활용하여 개설 및 시행 가능

○ **교육기간** : 2027년 1월 ~ 2028년 2월

(3) 무역현장 마케팅실습 : 총 270시간 이상 (학점 6학점 이상)

○ **교육방식 및 내용**

- 각 사업단별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중심의 산학협력업체 선정
- 수출아이템 발굴, 시장조사 및 현지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 수출계약 체결, 사후관리 등 수출 全과정 총괄대행 → 수출입실무 실습 활동을 통한 현장 맞춤형 실무 능력 배양
- AI 활용, e-마켓플레이스 및 SNS 등 전자상거래 활용 무역교육 및 온·오프라인 실습 시행

<산학협력업체 선정 기준>

■ **대상 :** 수출관련 업무를 실습 형태로 제공, 참여 학생의 무역업무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기업 (GTEP사업단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필수)

■ **수출지원활동 세부내역** : 수출 全단계 지원

1. (사 전) 기업의 아이템 분석, 진출희망지역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2. (현 장) 국내외 전시회를 비롯한 해외마케팅 활동 등
3. (사 후) 수출계약에 필요한 제반활동 및 계약이후 모든 활동 등

■ **세부 선정기준**

1. 사업단 **특화산업을 위주**로 수출 하고 있거나(수출초보기업), 또는 향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내수기업)

ㅇ **수출초보기업으로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기업으로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전문 인력 및 무역실무지식 등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기업

ㅇ **내수기업 중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 특화지역 수출에 적합한 아이템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기업으로 GTEP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산학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2. **사업단 소재 지역 중소기업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수출초보기업), 또는 향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내수기업)**

ㅇ **사업단 소재 지자체 및 유관단체의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

3. 무역인력 양성 및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

ㅇ **수료생의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 (GTEP수료생 既채용기업 우대)
ㅇ **1, 2번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외마케팅 실습을 통한 기업 업무 노하우 습득 등으로 참여 학생의 무역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전년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GTEP을 통한 수출지원 효과는 적으나, 참여 학생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무역유관기관 등(단, 사업단 평가시 해당기업 수출실적은 제외)

ㅇ **교육시간** : 270시간 이상

– 무역현장마케팅실습 확인서, 근무 증명서 등으로 시간 인정

(단, 1개 협력업체 당 30시간 이상 실습 필수)

ㅇ **교육기간** : 2027년 1월 ~ 2028년 2월 **(단, 기본교육 이수시 가능)**

(4) 특화지역 컨설팅

○ **교육방식 및 내용**

– 국내 특화지역별 컨설턴트를 무역협회에서 파견, 산학협력기업의 수출 지원활동, 전자상거래 활동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시행

· 해당 국내 지역 특화산업 무역실무를 대상으로 무역업무 10년 이상 경력자를 컨설턴트로 구성, 컨설팅과 함께, 교육커리큘럼 감수 및 교수요원으로 활용

– 산학협력기업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사항 점검, 온라인 컨설팅 시행

– 주기적 학교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컨설팅 및 교육 시행

○ **교육기간** : 무역현장 마케팅 실습기간과 동일

(5) 취·창업 연계사업 시행

○ **목적 및 내용**

– GTEP사업 참여 학생 및 수료생에 대한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단 자체 연계사업 시행

· 각 대학 취업지원 부서 및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 '채용박람회' 개최
·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외부기관 인턴십 MOU체결,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 기타 취·창업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등

– 취·창업 연계사업 시행 결과는 연차평가에 반영

○ **시행기간** : 2027년 1월 ~ 2028년 2월

2 사업단 구성 및 참여 학생 선발

○ **사업단 구성**

– 사업단장(1인), 지도교수(1~5인), 지원팀장*(1인)

* 지원팀장은 사업관리 행정요원으로 참여 학생의 지원팀장 겸직 불가

– 참여 학생 수 : 사업단 자율(단, 기본교육 이수 학생 25명 이상 권고),

○ 참여 학생 선발

– 재학생으로 1년 3개월간 GTEP사업단에 지속적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중 전공, 어학, 인성, 성별 등을 고려해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에서 선발

· 수료생 취업 및 중소기업 무역인력 공급 지원을 위해 3~4학년 선정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우대, 다문화가정 출신자 우대 등 고려

3 참여학생 수료

○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참가학생 중 출석률 및 교육실적 등을 기준으로 총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수료자격 부여

평가 항목	배점	평 가 산 식
■ 기본교육 종합평가(필수)	13	평가점수 × 0.13
■ 공인외국어 점수(필수)	20	TOEIC 성적 × 0.02
■ GTEP교육 학점 평균(필수)	10	(학점 평균/4.5점) × 10
■ 무역관련 자격증취득(선택)	10	1등급 10점, 2등급 8점, 3등급 6점
■ 산학협력 중소기업 현장실습 (필수)	27	참가시간 × 0.1
■ 인성 및 기여도(필수)	20	사업단장 정성평가 (참여율, 인성 등을 종합 평가)
합 계	100	

1. 기본교육 종합평가는 기본교육 성적으로 함
2. 외국어 성적은 TOEIC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 점수로 평가
3. 학점은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GTEP 교육에 한하며, 4.5점 만점으로 환산
4. 무역관련 자격증 분류 (개수에 상관없이 최고 등급 자격증 1개로 평가)
 - ㅇ 1등급 : 관세사(1차), 국제무역사 1급,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 ㅇ 2등급 : 무역영어(1급),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2급), 수입관리사
 - ㅇ 3등급 : 무역영어(2급),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외환전문역 2종, 유통관리사 3급, 기타 무역관련 자격증
5. 가점제 시행 : **외부기관장** 포상 1건당 5점 부여 (최대 10점)

4 인증제도 운영

○ 개 요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 중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이론과 실무측면의 최정예 인재만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의 **‘지역무역전문가 인증서’** 수여

○ 인증 평가항목

1) 공통항목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수료
– 학업성적 : 전체 평점 3.7 이상 또는 GTEP 활동 학기 평점 4.1 이상(4.5 만점)
– 외국어 : TOEIC 8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공인시험 점수 보유자
– 수출실적 (택 1)
 · 소속팀 무역계약 1건 이상 체결 + 수출실적 2천불 이상 달성
 · 전자상거래 상품 등록 및 판매 1건 이상 달성 + 마케팅 분석보고서 1건 작성
– 산학협력업체의 ‘해외시장진출보고서’ 작성 (1건 이상)

2) 자격증 (택 1)

– 관세사(1차), 국제무역사 1급,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中 1개
– 무역영어 1급과 기타 무역관련 자격증* **동시 보유**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 이상, 수입관리사 등

3) 기 타

– 수료 이후 2년간 인증 기준 충족 시 인증서 발급
 · 차기 수료시점에 검토 및 발급 (단, 해당 대학이 GTEP참여시)

5 사업비 지원 및 대응자금

○ 사업비 지원 : 20개 대학 기준 9,150만원 내외

1) 교육비 : 1,575만원

■ 기본교육비 : 450만원 (15만원 × 30h)
■ 심화교육비 : 1,125만원
- 산업특화과정 : 450만원(10만원 × 45h) + 특별과정 : 675만원 (15만원 × 45h)

2) 현장 실습비 (무역현장 마케팅 + 전자상거래) : 4,635만원 내외

■ 무역현장 마케팅 실습비 : 4,185만원 내외
- 사업단별 교육인원, 연차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반영, 실습비 차등지원 예정

■ 전자상거래 실습비 : 450만원
- 전자상거래 계정 운영 및 등록비, 리스팅 페이지 제작, 번역, 마케팅 및 프로모션 비용, 물류 배송비 등 포함

3) 사업단 운영 인건비 및 산학협력단(처) 간접비 : 2,700만원

■ 인건비 : 2,400만원
- 보조인력 : 2,080만원 (160만원 × 13개월, 퇴직금 포함)
- 사업단장 및 지도교수 활동비 : 연간 320만원

■ 간접비 : 총 300만원

4) 특화지역 컨설팅비 : 240만원(무역협회 집행)

■ 특화지역 컨설팅비 : 240만원
- 특화지역 컨설팅비 : 240만원 (40만원 × 6회)

○ 대응자금

– 사업기간 동안 대학은 연간 **5,000만원 이상*** **현금** 매칭펀드 조성 의무

* 대학, 지자체, 기타출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사업단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

– 예산편성
- 사업단인건비 (보조인력, 사업단장·지도교수 활동비)
- 심화교육비, 무역현장 마케팅 실습비
- 기타 : 인증취득지원비, 집기구입비, 사업단운영비 등

* 5,000만원 초과 대응자금의 경우, 대응자금과 유사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사업단이 GTEP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과 산학협력단(처)이 협의하여 편성 조정 가능

○ 사업비 집행 방법

– 각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사전 원인행위(의사결정) 후,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처)에서 계약체결 또는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단 자체의 선지급 집행방식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처)의 지출결의에 따라 사업비 관리통장에서 지출대상자(사업자, 강사, 사업단장 등 사업관계자)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법인카드 결제처리 하여야 함 (**정부보조금 집행포털 'e-나라도움' 사용**)

– 계약의 추정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며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함

6 사업단 운영관리 및 평가

○ 사업단 운영 관리

– 사업단 현장실태 점검

·내 용 : 협약사항, 교육현황, 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 ·시기 및 대상 : (정기) 5월~8월(전체 사업단), (특별) 수시

– 사업비 정산

·내 용 : 사업비 전체(국고, 대응자금)의 사용내역 및 증빙 ·시기 및 방법 : 사업종료 시점(시행 차년도 2~4월 중), 외부 회계법인 위탁

○ 사업단 평가

– 시 기 : 기수별 사업종료 시점(시행 차년도 2~4월 중)
– 방 법 :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증빙을 토대로, 사전에 통보된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 시행

– 평가항목* : 교육성과, 수출지원성과, 취·창업 활동, 만족도 등
* 사업단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평가 지표 검토·보완 가능

○ 평가결과의 활용

– 次년도 보조금 차등 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을 상(6개大)·중(8개大)·하(6개大) 그룹으로 분류 ·상·하위 1, 2위 사업단 : 기본 국고교부금 대비 ±7백만원 ·상·하위 3, 4위 사업단 : 기본 국고교부금 대비 ±5백만원 ·상·하위 5, 6위 사업단 : 기본 국고교부금 대비 ±3백만원

– 평가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은 해당 사업단에 개선요구

· 하위평가 대학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차기 평가시 환류현황 점검 및 평가반영)

– 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가 계속하여 하위권인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 검토 가능 (연차평가 2회 연속 하위 1, 2위 대학)

〈별첨2〉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21~23기 사업참가신청(계획)서 및 양식

접수번호		표준양식A4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참가 신청(계획)서

신청학교						
소재지역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신청기관 부담금 (연간)		현금(천원)			현물(천원)	합계(천원)
	금 액					
	출자구분	대학	지자체	기타		
	구성비	%	%	%	%	100 %
총사업기간	2027. 1. 1. ~ 2030. 3. 31. (39개월)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84호에 따라 별첨과 같이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참가 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신청기관 서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및 파일 포함)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신청기관장 :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주 의 사 항

1. 본 신청(계획)서는 사업단 선정은 물론 선정 이후의 사업단 평가(연차, 최종)에도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사업단에 대한 평가는 사업단이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한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방식**이 상당 비중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 예산은 사업단에 매년 차등 교부될 예정입니다.

2.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선정 및 평가 모두에 활용되거나, 선정 또는 평가 중 하나에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대학교의 현실과 역량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계획의 제출은 선정요소와는 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사업단 선정 취소는 물론 낮은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3. 사업신청서 내용은 제21기('27.1～'28.3)만이 아닌 **전체 사업기간('27.1～'30.3) 동안 적용됨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모든 자료는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작성 오류 등으로 불일치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장 하위의 평가점수 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1】 신청기관 서약서

서 약 서

우리 대학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84호에 의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향후 5년간 산업통상부에서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관장(총장) (인)

사업총괄책임자 (인)

【첨부2】 **사업계획서**

1. 신청기관 개요

1. 대학명			
2. 소재지			
3. 대학총원(1학년~4학년)			
4. 무역(통상)학과 개설	☐ 개설 ☐ 미개설	4-1.학과총원	
5. 산학협력단(처) 보유	☐ 보유 ☐ 미보유		

2. 책임자 인적사항

(1) 총괄책임자(사업단장)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연 령
	(漢 字)					만(세)
소 속	대학 과 (보직 :)					
학 력 (최종학력부터 기재)	기 간		학교명	수학상태	전 공	학 위
	부 터	까 지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졸업, 수료, 중퇴		
경 력 (최종경력부터 기재)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부 터	까 지	근무처 명	소재지	전화번호	
특기사항						

(2) 지도교수

<table>
<tr><td rowspan="2">성 명</td><td>(한 글)</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연 령</td></tr>
<tr><td>(漢 字)</td><td colspan="2"></td><td></td><td>만(세)</td></tr>
<tr><td>소 속</td><td colspan="5">대학 과 (보직 :)</td></tr>
<tr><td rowspan="5">학 력
(최종학력부터
기재)</td><td colspan="2">기 간</td><td rowspan="2">학교명</td><td rowspan="2">수학상태</td><td rowspan="2">전 공</td><td rowspan="2">학 위</td></tr>
<tr><td>부 터</td><td>까 지</td></tr>
<tr><td></td><td></td><td></td><td>졸업, 수료, 중퇴</td><td></td><td></td></tr>
<tr><td></td><td></td><td></td><td>졸업, 수료, 중퇴</td><td></td><td></td></tr>
<tr><td></td><td></td><td></td><td>졸업, 수료, 중퇴</td><td></td><td></td></tr>
<tr><td rowspan="5">경 력
(최종경력부터
기재)</td><td colspan="2">기 간</td><td colspan="3">근 무 처</td><td rowspan="2">담당업무
(최종직위)</td></tr>
<tr><td>부 터</td><td>까 지</td><td>근무처 명</td><td>소재지</td><td>전화번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특기사항</td><td colspan="6"></td></tr>
</table>

※ 2명 이상일 경우 상기 양식을 이용, 전체 인원 작성

3. 신청기관 지원 사무실 및 전용 회의실 환경

구 분	위 치 (소재지)	전용면적(㎡)/ 수용인원	PC 보유 대수	인터넷 회선 수 (or 무선인터넷 설치여부)	전화선번호
전용 사무실		/			
전용 회의실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만을 위해 배정된 전용 사무실, 회의실만 기재요망, 사진 첨부

4. 신청기관 지원가능 사무용 집기

(금액단위 : 천원)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구입일	용 도	구입금액	비 고
합 계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만을 위해 전용공간에 비치할 수 있는 집기만 기재요망

5. 본 사업을 통한 최종 목표 및 성과활용 계획

최 종 목 표	
< 요약 > : 반드시 1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본문 >	
성과 활용 계획	
< 요약 > : 반드시 1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본문 >	

6. 특화산업 선정 및 산업특화 계획

[권역별 산업특화 분야]

구분	권역	산업특화 분야
5극	수도권	화장품·뷰티, 패션·섬유, 생활용품, 바이오헬스, 가전·전자, ICT·디지털
	중부권(충청)	화장품·뷰티, 바이오헬스, 가전·전자
	서남권(광주·전남)	식품·농식품, 바이오헬스
	대경권(대구·경북)	식품·농식품, 패션·섬유, 가전·전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식품·농식품, 생활용품, 조선·해양
3특	강원	식품·농식품, 바이오헬스
	제주	식품·농식품, 화장품·뷰티
	전북	식품·농식품, 바이오헬스

※ 상기 권역별 산업특화 분야는 권장사항으로, 대학은 지역 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8개 특화 산업 중 다른 분야를 선택할 수 있음. 또한 해외지역 특화, 서비스 수출 특화 등 대학의 고유한 특화 전략이나 계획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추가 기재 가능

구분		희망 특화산업
중점산업		식품·농식품/ 화장품·뷰티/ 패션·섬유/ 생활용품/ 가전·전자/ 바이오헬스/ ICT·디지털/ 조선·해양
		1순위 : 2순위(선택) :
산업 선정 이유 및 특화 계획	1 순위	자유 분량
	2 순위 (선택)	자유 분량

7. 세부사업 추진내용 및 일정

Ⅰ. 사업단 시행 '심화교육' 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1. 교육 총괄

구분		기본 교육	심화교육			무역현장 마케팅 실 습	계
			정규무역 과정	산업특화 과정	특별 과정		
시간	계획						
	의무조건	30시간	90시간	45시간	45시간	270시간	480시간
학점	계획						
	의무조건	-	6학점	3학점	-	6학점	15학점

2. 기본교육 (30시간 중 표준 커리큘럼 18시간 제외한 12시간 이상 교육 내용)

* 무역실무 기초교육,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코딩 데이터 분석, 자격증, 어학반 등 자율 커리큘럼 구성
* 교육시간, 커리큘럼, 교수명, 교육내용, 교육일정(학기별, 계절학기 포함) 등 포함

< 요약 > 반드시 1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본문 >

3. 심화교육 (180시간 이상, 9학점 이상)

* 교육시간, 교육(부여)과목, 부여학점, 교수명, 교육내용, 교육일정(학기별, 계절학기 포함) 등 포함

가. 정규무역과정 (90시간 이상, 6학점 이상)
< 요약 > 반드시 1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본문 >

나. 산업특화과정 (45시간 이상, 3학점 이상)
< 요약 > 반드시 1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본문 >

다. 특별과정 (45시간 이상, 학점자율)
< 요약 > 반드시 1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본문 >

관련 참고 사항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은 총 48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❶ 기본교육(30시간), ❷ 심화교육(180시간 이상, 9학점 이상), ❸ 무역현장마케팅실습(270시간 이상, 6학점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❶ 기본교육은 총 30시간 중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실무 특강(18시간)' 표준 커리큘럼을 제외, 12시간은 대학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발인원 대다수가 무역학 비전공자일 경우 무역실무교육 30시간 필수 시행**)

❷ 심화교육(180시간 이상, 9학점 이상) 중
"정규무역과정"은 비무역학 전공자 위주로 최소한의 무역학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기 개설된 과목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국고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산업특화과정"은 정규과목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GTEP 사업단 선정 이후 개설된 신규과목에 한하여 국고 교육비가 지원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과정"은 특화산업별 e-마켓플레이스 및 SNS활용 마케팅 등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무역교육 프로그램(20시간 이상), AI 무역실무 교육(15시간 이상), 취창업 교육(10시간 이상)은 의무과정으로 각 사업단에서 특강 형태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총 45시간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Ⅱ. 산학협력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현장마케팅실습' 세부운영 계획을 기술하십시오.

1. 산학협력기업

가. 산학협력기업의 발굴 및 선정

* 선정요건, 프로세스 등 기재

나. 21~23기 기수별 계획 업체 리스트 (예상)

기업명	품목	소재지	특화산업	주요 산학협력 내용	비고
			* 특화산업		
			* 기타산업		

* 특화산업 대상기업이 전체의 40% 이상 포함

2. 산학협력기업의 수출 지원방법

가. < 요약 > 반드시 1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나. < 본문 > 세부 계획

*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및 전자상거래 활용 방안 반드시 포함

관련 참고 사항

무역현장마케팅실습(270시간 이상, 6학점 이상)은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으로 구성된 산학협력기업의 수출지원을 통한 참여대학생의 무역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무역현장마케팅실습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제품, 대상 수출산업 및 시장 환경 등을 분석하고, 산학협력기업에 맞는 수출지원계획을 수립, 국내외 전시회 참가, e마켓플레이스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등의 수출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수출계약 및 사후관리까지 수출 全 과정을 지원합니다.

국내외전시회 참가는 사업단별로 연간 참가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 학생들의 활동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해외 참가의 경우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획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우수학생 및 선발기준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전시회 단순 참관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전시회 참관은 협력업체의 수출영업 대행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활동을 의미합니다.
모든 전시회는 규모 및 횟수, 파견(계획)인 전시회 명 등을 명시하시되, 성과제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Ⅲ. 소속 대학생의 지원 현황 및 사업단 선발 학생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을 기술하시오.

< 요약 > 반드시 1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본문 >

1. 대학교의 현재 지원 현황 (제도, 시스템 등)
 가. 무역자격증 취득 지원
 나. 어학능력 향상 지원
 다. 취·창업 확대 및 사후관리 지원
 라. 기타

 * 무역(국제통상)학과 소속 대학(예 : 상경대)의 현재 지원제도를 기술하되, GTEP 1기~20기 참가사업단의 경우 GTEP사업에 의한 지원 현황은 제외하고 작성하십시오.

2. 향후 학생 지원계획
 가. 무역자격증 취득
 나. 어학능력 향상
 다. 취·창업 확대 및 사후관리
 라. 기타

 * 사업단으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계획을 기술하십시오.

Ⅳ. 대응투자(Matching Fund) 마련방안을 기술하시오.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대학자금	지자체 지원	기 타	계
'27년도				
'28년도				
'29년도				
계				

2. 조달계획
 - 대학 자체 자금
 - 지자체 자금
 - 기타 협력업체 등

 * 위 2의 경우 주요 협력사업 및 예상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단순 장학사업 등의 경우 협력사업 내용은 작성할 필요 없음)

Ⅴ. 학내 · 외 유관기관 협력 계획

1. 총괄표

구 분	협력기관명	주요 협력내용	추진 현황
학내			
학외			
계			

* 주요 협력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기업 연계 현장실습, 해외마케팅, 취업지원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

2. 주요 협력사업 추진계획
- 협력기관별 역할 및 연계방안
- 협력을 통한 교육·현장실습 등 추진계획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 운영방안

Ⅵ.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목표와 계획을 기술하시오

1. 홍보목표 : 연간 회 이상
2. 홍보 계획

작성시 참고 사항

반드시 **외부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실적의 예상목표 및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교내지, 대자보 등 제외)

Ⅶ. 학생 모집에 대한 계획 및 선발 기준을 기술하시오.

1. 모집 계획
 - 모집시기, 방법, 인원, 비전공 학과 학생 모집 방안 등에 대해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선발 기준

작성시 참고 사항
학생 개개인의 최저 기준이 아닌, 전체 학생의 평균 성적을 기술하되, TOEIC 성적이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매년도 3월 발표(= 2월 응시) 기준 예상 TOEIC 성적으로 작성하십시오. 학년, 성별, 인성, 어학성적 등 자체 기준을 기술하시되,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우대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Ⅷ. 사업종료시 성과계획을 기술하시오

1. 기수별 학생 수료율 : () % 이상

 * 수료율 : 수료인원 / 사업 참여 학생 (기본교육 이수인원)

2. 참여 학생의 전문역량 강화

- 기수별 학생 1인당 무역관련 자격증 취득 목표 : 1인당 ()개 자격증
- 기수별 평균 어학성적(TOEIC 기준) 향상 점수 : () 점 이상

 * 참여 학생은 1차로 선발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2차로 수료시점에 최종 어학성적을 제출해야 함

3. 사업 참여 만족도 (사업 종료시 참여 학생 및 협력업체의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 참여 학생 만족도 : () % 이상
- 사업 참여 산학협력업체 만족도 : () % 이상

4.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장 지원

- 협력업체 수출기여 정도 : () % 이상

 * 협력업체 대상 100점 만점 만족도 조사 결과

- 기수별 수출기여액 목표 : US$ () 이상

 * 수출은 세관수출신고필증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수령 증빙, 수출기여액 인정서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이 중 1개라도 증빙이 없는 경우는 수출기여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취업률

① 기수별 취업률(매 기수 수료자료 제출 시점 기준) : ()%

 * 제21기('27 1～'28. 3)의 경우 '28. 3월말

② 기수별 기한취업률(매 기수 사업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말 기준) : ()%

 * 제21기('27. 1～'28. 3)의 경우 '28. 12. 31.

※ 취업률 : 취업자 수 / 취업대상자(졸업자 및 기취업자)

6. 취·창업 지원활동

① 기수별 취업 지원관련 사업단 자체 활동(사업) 목표 (개최 내용 및 횟수, 성과 등)

-

② 기수별 창업 지원관련 사업단 자체 활동(사업) 목표 (개최 내용 및 횟수, 성과 등)

-

Ⅸ. 기타 다음 사항을 기술하시오

1. 귀 대학의 무역(국제통상)관련 학과 졸업기준

2. '25~ '26년 졸업생 취업률
 가. 대학 전체
 나. 무역(국제통상)관련 학과

3. 수출 지원을 위한 대학 인프라 현황
 가. 본 사업과 연관 있는 대학 인프라 현황
 나. '25년 이후 주요 산학협력 실적

4.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추진실적
 * 규모, 재원, 예산내역, 사업내용, 주요 실적, 평가결과 등을 간략하게 기술

5. 최근 3년간 무역(국제통상)관련 학과의 신입생 평균 수능 성적 및 수능 커트라인

〈별첨3〉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운 영 규 정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운영규정

제정 2009년 3월 25일
개정 2012년 3월 19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개정 2014년 11월 30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7년 2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23년 1월 9일
개정 2025년 9월 2일
개정 2027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과 지역에 대한 전문 역량이 융합된 선진형 무역 인재를 양성하여 무역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이하 “사업” 이라한다.)” 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담당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를 말한다.
2. “위탁기관” 이라 함은 산업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의 운영, 관리, 평가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3. “사업단” 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단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4. “사업단장” 이라 함은 사업단 운영을 책임지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를 말한다.
5. “지도교수” 라 함은 사업단장을 보좌하고, 사업단장 부재시 사업단 운영을 책임지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수를 말한다.
6. “지원팀장” 이라 함은 사업단 행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별도로 고용된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말한다.
7. “참여학생” 이라 함은 사업에서 행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사업단 소속 재학생을 말한다.
8. “산학협력기업” 라 함은 사업단과 수출업무 대행, 전시회 참가, 단기

현장실습 근무 등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협약서를 사업단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9. “협력기관”이라 함은 현금 또는 기타 사업에 제반되는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원기업체를 말한다.
10. “산학협력단(처)”이라 함은 사업단 소속 대학에 설치되어 사업단 예산 집행을 주관하는 행정부서를 말한다.
11. “사업비”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무역관련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2. 국내 지역 주력산업의 특성, 관련 제품 및 해외시장 동향, 인증·규제,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을 포함하는 산업특화교육
3. 산학협력기업과의 전시회 및 전자상거래 실습

제4조(사업기간 등)

①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매기수별 1년 3개월로 하며, 사업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말까지로 한다.

②사업단 매기수의 총 교육시간은 48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 2 장 사업 운영체계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산업부는 매 기수별 사업의 추진방향, 예산, 추진일정 및 업무위탁 등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기관) ①제2조 제2호에 의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접수

2. 신규 사업단 선정에 관한 평가 및 주관기관의 협약체결 업무지원
3. 현장실태점검, 평가 계획의 수립
4. 사업단장 및 지도교수 등 사업단 구성원의 변경 승인 업무지원
5. 사업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관리
6. 무역실무, 지역특화, 현장컨설팅, 현장마케팅 실습 등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의 전반적인 관리
7. 사업 포털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8. 그 밖에 산업부가 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②위탁기관은 제5조 제2항 및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처리 결과 및 운영비 집행내역 등을 산업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관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 및 산업부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관리지침 등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위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단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2. 사업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⑤산업부는 위탁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선정위원회)

①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교 중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단을 선발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산업부, 위탁기관 및 사업 관련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평가위원회는 사업단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산업부, 위탁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3 장 사업단 구성

제9조(사업단의 구성 및 사업단의 장)

①사업단의 조직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부득이하게 구성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 위탁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단장
2. 지도교수
3. 지원팀장
4. 참여학생

②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단 운영의 총괄
2. 사업계획의 수립
3.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
4. 사업단 자체운영규정의 제정
5. 대응자금 초과분에 대한 예산편성
6.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산학협력단(처) 설치)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교는 대학교 내에 산학협력단(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의 모든 예산지출 행위는 사업단이 소속된 산학협력단(처)의 장이 최종 결재한다.

제11조(협력기관의 요건)

①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해당 권역에 소재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2. 해당 권역에 소재한 정부기관, 무역유관기관 및 지원기업체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기관이 권역 안에 없는 경우에는 권역밖에 소재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전용공간 및 기자재의 확보)

①사업단은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용공간을 설치하고, 이를 사업 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1. 사업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사업단 전용 행정사무실
2. PC 사용이 가능한 실습실

②사업단은 사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한 PC, 전화, 팩스, 프린터 등 기자재 및 사무실 비품을 구비해야 한다.

제 4 장 사업단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제13조(사업의 공고)

①산업부는 사업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 목적 및 사업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교육계획 및 학점인정기준
5. 참여학생 선발 및 수료기준
6. 대응자금(Matching fund)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신청)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교는 위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공고 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참가신청(계획)서
2. 신청기관 서약서
3. 표준사업계획서(참여학생 선발기준을 포함)

②산업부 또는 위탁기관은 사업 신청대학교의 자격조건 또는 교육환경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단 선정) 사업단 선정은 산업부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단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16조(우수 사업단에 대한 우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사업단을 기 운영 중인 사업단 중 우수 사업단에 대해서는 선정시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체결)

①위탁기관장은 해당년도 보조사업 협약서를 1월까지 산업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교의 장은 선정결과가 확정·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여 위탁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관장은 협약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산업부 및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의 사업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사업단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업의 유지조건)

①사업에 참가하는 대학은 협약체결 당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유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산업부는 실태점검 평가의 결과, 정상적인 사업단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정된 사업단에 대해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단의 관리 및 평가

제20조(현장실태점검) 산업부 및 위탁기관은 사업단의 관리・평가를 위하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

①위탁기관은 사업단의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매 기수 사업기간 종료 1개월 내에 평가한다. 다만, 신규 사업단 선정에 참여한 사업단의 마지막 연차 사업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각 사업단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약사항 이행 여부
2.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
4. 그 밖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의 결과는 사업단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차등 지원 및 사업단 선정 등에 활용한다.

제23조(선정의 취소)

①산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현장실태점검, 평가의 결과 중대한 협약위반 및 운영요령 등 관계규정 위반으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단 선정 및 유지를 위해 허위사실 기재, 허위증빙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3. 사업비 예산의 유용・횡령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4. 사업단 모집공고상의 대응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5. 사업 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사업목적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참여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7. 평가에 불응하거나, 본 규정에서 정한 중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 2위에 포함된 경우
9. 그 밖에 사업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선정 취소된 사업단은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4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국고보조금은 산업부가 지원하는 정부예산을 말한다.
2. 사업참여 대학교의 대응자금은 대학발전기금 또는 법인 전입금 등에서 대학이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을 말한다.
3. 협력기관・산학협력기업 대응자금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력기관 및 산학협력기업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말한다.
4. 기타 대응자금은 사업추진을 위한 동조 3호의 법인을 제외한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말한다.

제25조(사업비 구분)

①사업단은 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의 수령·관리를 위해 각각의 사업비 통장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사업비는 동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 공문과 함께 사업비 통장사본을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사업비는 산학협력단(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업단장의 책임하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단의 회계)

①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처)의 회계 안에서 사업단내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단에서는 원본 1부를 산학협력단(처)에서는 사본 1부를 각각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국고보조금 예산의 편성)

①사업단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은 사업용도에 따라 사업단 인건비, 현장마케팅실습비, 산학협력단(처) 간접비, 교육비 등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 인건비”는 사업과 관련된 사업단장, 지도교수 및 행정전담직원(지원팀장)에게 월단위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③ “현장마케팅실습비”는 온·오프라인 전시·마케팅,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한 수출업무 대행 시 산학협력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1. “현장마케팅실습비”는 위탁기관이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차등할 수 있으며, 협약된 이후에도 조정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처) 간접비”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관리 업무의 수행대가로 산학협력단(처)에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⑤ “교육비”는 기본교육, 심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 “기본교육비”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사전교육과 집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심화교육비”는 사업단 자체에서 실시하는 산업특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8조(대응자금 예산의 편성)

①사업단은 대응자금 5천만원을 편성해야 하며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대응자금 통장에 입금되어야 한다. 다만, 협력기관 및 산학협력기업의 대응자금은 6개월까지 입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대응자금 예산은 사업용도에 따라 심화교육비, 사업단 인건비, 현장마케팅실습비, 인증취득 지원비, 사업단 운영비, 집기구입비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취득 지원비”는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자격증 및 어학지원 등과 관련된 교육비를 말한다.

④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인쇄·발송비, 시설보수, 통신비, 제세공과금, 워크샵 및 세미나, 협의회활동비를 말한다.

⑤기타 사업단 운영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강사료 및 특강.자문료, 국내외 출장비, 회의비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정한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⑥대응자금은 당기에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장이 이월·승인한 경우, 차년도에 집행가능하나, 재이월은 할 수 없다.

⑦위탁기관장은 각 사업단이 대응자금을 미집행한 경우, 사업비 운영실적 평가 반영 및 정부예산 차등배분 기준에 준용할 수 있다.

⑧ “집기구입비” 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자산) 구입비를 말한다.

제29조(대응자금 초과예산의 편성)

①각 사업단의 대응자금(5천만원)을 초과 편성할 경우, 사업단장은 초과분에 대해 위탁기관의 감독하에 예산 집행계획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단은 예산편성계획을 위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각 사업단은 사업비 관리를 별도의 사업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하며 산업부 및 위탁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비는 사업단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산학협력단(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사업비(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는 사업비 관리지침을 통해 당해 연도 사업기간 내에 집행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④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일 경우), 법인용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등의 원본증빙을 사용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지출경비가 3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사업단은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위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사업단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국고보조금 환수, 사업단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단은 당기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원리금)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실시한 후 위탁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보고

시에는 입출금 현황이 기재된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사업단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산업부와 위탁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비 반납 및 전용)

①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해야 하며, 집행잔액은 사업 종료 시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각 비목간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단 협의회 구성)

①사업단은 산업부 및 위탁기관과의 업무 협의와 정책 건의 등을 위하여 각 사업단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사업단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다. 다만, 정책의 건의 등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제 7 장 사업의 관리

제34조(참여학생의 선발 및 관리)

①사업단 참여학생은 사업단이 선정 신청시 제시한 참여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참여학생이 사업기간동안 산학협력기업과 연계하여 무역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산업부, 위탁기관에서 제시한 선발 인원을 준수하고 선발인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내용과 사유를 위탁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35조(교육)

①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참여학생은 전원 산업부가 별도로 정한 표준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에서는 표준커리큘럼에 따른 이수 과목명을 명시하고, 학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수출입활동 산학협력기업 선정)

①산학협력기업은 사업단이 사업신청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산학협력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추진 중 발생되는 산학협력기업은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한다. 이때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사업단은 참여학생으로 하여금 상시 산학협력기업의 수출입활동을 지원하도록 지도하고 수출입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해야한다.

제37조(수료증) 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해당년도 내 이수하고 산업부가 정한 일정기준을 통과한 참여학생에 대하여는 산업부 장관 명의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전문가 인증) 사업을 통해 수료한 참여 학생 중 수료 후 2년 이내로 산업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이 겸비된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전문가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9조(장비 유지관리)

①사업단에서 구입하거나 현물 출자한 교육기자재 등은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설치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단이 취득한 장비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부착하고 구입에서 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그와 관련된 자산등록내역을 비치하여 산업부의 제출 요구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보고의무) 사업단장은 산업부 및 위탁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단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현황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공개) 산업부 및 위탁기관에서는 사업에 선정된 대학교 및 사업단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사업단 홍보)

①사업단은 사업 전용 포털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사업의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②사업단은 사업 전용 포털에 당해 사업단의 운영 및 교육현황 등을 최신의 내용으로 등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서류보존)

①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사업단이 원본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부 및 위탁기관장의 원본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원본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

제44조(사업단장 위촉장) 산업부는 각 사업단장에게 위탁기관장 명의의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장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 동 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동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1. 동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동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동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동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동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동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동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동 규정은 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동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

성 명 :

귀하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실시된 제 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의 모든 교육과정(기본교육 시간, 정규과정 시간, 산업특화과정 시간, 전자상거래교육 시간, 무역현장마케팅 실습 시간)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ㅇ ㅇ ㅇ

【 별지 제2호 서식 】

지역전문가 인증서

제 호

지역무역전문가 인증서

CERTIFICATE OF GLOCAL TRADE EXPERTS

소 속(UNIVERSITY) :

성 명(NAME) :

위 사람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과정('00.1.1~'00.3.31)을 이수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abo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from Jan 1, OOOO to Mar 31, OOOO.

In recognition of outstanding performance in exports, this certificate is presented under the Article 38 of the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regulations.

2000년 0월 00일

산업통상부장관 0 0 0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 별지 제3호 서식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장 위촉장

제 호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사업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ㅇ ㅇ ㅇ